

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9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인 징수관, 경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에 재산관리관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당초 3,000만원 이상이었던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(안 제4조).
 - 경리관, 지출원, 일상경비출납원 :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 - 기타 회계관직 :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, 동법시행령 제138조

□ 예산수반사항 : 9,540천원

□ 사전예고 : 생략

- 근거 : 『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』 제3조제3호

□ 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개정계획(회계과-16307호)

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의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 제1호 중 “지출원, 출납원”을 “재산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”으로 하며 제2호 중 “계기된 자”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재정보증 한도액)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리관, 지출원,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2. 제1호 외의 기타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자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 계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김 시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경리담당 박 광 옥
	담당자 성명·전화	박 은 주 (행정 3071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재정법</u>」 제95조 -----.</p>
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수관, 경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<u>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</u> 2. 제1호 <u>계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</u>으로서,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	<p>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-----</p> <p>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재산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</u> -----</p> <p>2. --- <u>이외의</u> -----</p>
<p>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<u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신 설> 2. <신 설> 	<p>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<u>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경리관, 지출원,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. 제1호 외의 기타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
<p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<u>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<u>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